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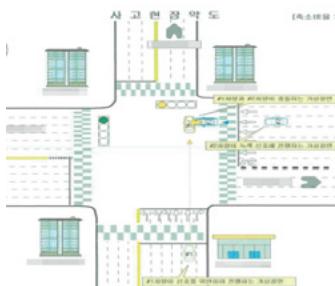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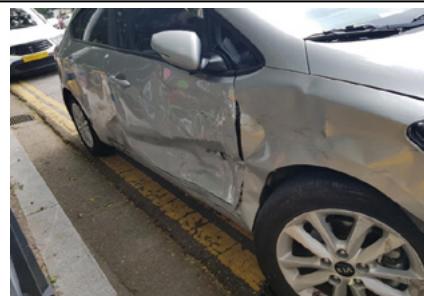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한쪽 차량 신호위반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0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5154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청구차량간의 충돌사고 	
참고 인정기준 201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 중이고, 피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 중이므로(신호위반),</p> <p>• 과실도표 201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 과실 100% 적용함이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가 아닌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고,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으므로,</p> <p>• 청구인 40%, 피청구인 60% 과실적용함이 타당함</p>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으로 판단됨

- 피청구차량 조수석 측면부 파손
 - 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피첨구차량이 적색신호(신호위반)에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직진 주행 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임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첨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였고(신호 위반),
 - 만약, 피첨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차량 0% ● 피첨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한쪽 차량 신호위반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01
	신호등 있음	사거리	녹색 직진	적색 직진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838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10 : 9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청구차량은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참고 인정기준 201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사실은 있으나, 본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따라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은 인정함 그러나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노면지시 위반 및 무리한 진행 등이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임 따라서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목격차량의 동영상(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선행 청구차량의 모습)
- 목격차량의 동영상(적색신호에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신호위반)

- 목격차량의 동영상(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의 모습 [위, 아래])

주요 쟁점

- 신호위반 사고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비율

결정 근거

- 청구차량 녹색신호에 교차로 직진, 피청구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 직진
- 동영상상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상황이 확인됨
- 청구차량 우측 앞부분, 피청구차량 운전석 측면부 파손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신호대기 후 녹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우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피청구차량 신호위반),
- 청구차량이 좌회전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은 인정되나, 사고발생에 대한 기여도는 높지 않으므로 기본과실 0% : 100%에서 현저한 과실 10%를 청구차량에 가산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10% ● 피청구차량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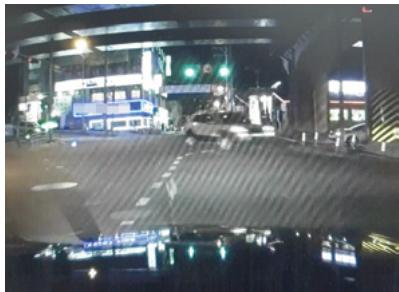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가)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사고(A녹색에 직진 진입 적색에 충돌) (수정과실)				참고기준 202 (가)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70162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적색신호로 변경되었고, 이후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2(가)	<p>(가) A차량이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시까지 교차로를 미처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p> <p>• 피청구인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음</p> <p>•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주장</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진신호에 출발하는 모습 • 직진신호에 진행 중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녹색신호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된 차량과 녹색신호에 후진입한 차량 사이의 과실 비율
- 과실비율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신호 변경 후 급출발

결정 근거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됨
- 피청구차량은 직진신호에 진행하였으나,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청구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동영상에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 진입 후 녹색-황색-적색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피청 구차량이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교차로 내 상황을 살펴 청구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였어야 함
- 피청구차량이 녹색신호로 변경된 후 곧바로 출발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202도 (가) 기본과실 30% : 70% 에서 현저한 과실 10%를 피청구차량에 가산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황색 대 적색) (기본과실)					참고기준 20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5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좌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03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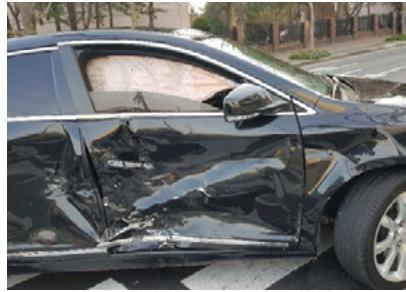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 신호에 직진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과속으로 진입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주장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경수번호 제2019-경월서-00000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민등록번호 국적	(영문법호 :)
운전면허 종별 :	번호 :	
사고처방 차종 : 소형차	번호 : (소유자 :)	
발행일자 2019.01.08 16:10	기타 : (주)한국자동차보험 및 한국손해보험	
운전면허 국적	운전면허 국적	
사고위치 신호 또는 차시 번호	신호 또는 차시 번호	
사고원인 회피내용	회피 : 차량 0, 부딪 0, 경 0, 놀라 0, 편심 0 사고원인 : 차량과 차량이 서로 충돌한 후 차량이 회피하려 했을 때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단순 충돌)를 충족한 사고임	
사고개요 사고내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청구 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사고지점 및 피청구차량 파손부위

	
---	--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였는지 여부
- 황색신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차량의 과실비율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 중으로 기재되어 있음
- 청구차량 앞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측면부 파손 됨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좌측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은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는지 의문이 있다고 다투고 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실비율 인정기준 203도표의 기본과실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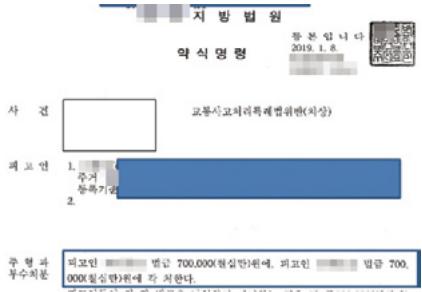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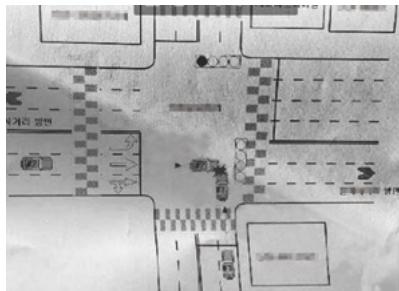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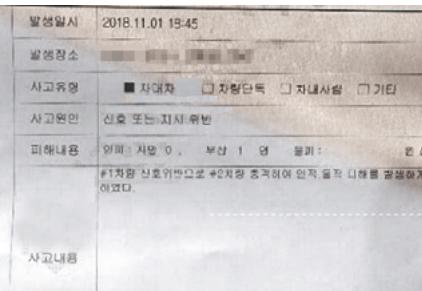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황색 대 적색) (수정과실)					참고기준 20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0102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5 : 65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3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므로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100%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장소는 동일 폭의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70만원 벌금에 처해졌으므로, 과실비율은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사진(피청구차량 방향)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 청구차량이 진행한 좌측도로의 폭이 넓은 상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운전자를 동일하게 70만원의 벌금에 처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1차량(가해차량)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황색신호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 사이의 과실비율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이 다를 경우(대소로 구분 가능 도로)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법원의 약식명령서상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동일하게 70만원의 벌금에 처해짐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를 대로로 볼 수 있고, 양 차량의 충돌부위 고려함

결정 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양 차량의 운전자 모두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결정된 점, 청구차량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행한 점 및 양 차량의 충돌부위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35% ● 피청구차량 65%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대 왼쪽 도로에서 직진 사고(동일폭)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 우측도로에서 직진	↑ 좌측도로에서 직진	참고기준 205 (나)
--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6500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선진입하여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후진입하여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5(나)		<p>(나)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후진입차량의 과실을 중하게 보아 오른쪽차량과 왼쪽차량의 구별 없이 선진입차량과 후진입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 이는 어느 차량의 선진입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진입으로 본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측통행차량이지만, 명백히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차량을 후미추돌 함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전방주시태만, 양 차량의 접촉부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직진한 차량이므로, 피청구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우선권이 있음 따라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05 동시진입 사고의 기본과실 적용하여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 조수석 후측면 파손 • 동영상에 청구차량이 선진입하는 모습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 운전석 앞부분 파손 • 동영상에 청구차량이 선진입하는 모습2

주요 쟁점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및 과실비율

결정 근거

-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직진을,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 상황이 확인됨
- 청구차량 운전석 앞부분, 피청구차량 조수석 앞부분 파손됨

결정 이유

-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도로에서 각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
- 피청구차량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였고, 청구차량도 피청구차량의 진입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동시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06 (가)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441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대로인 좌측도로에서 직진하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인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다가 동시에 교차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06(가)	<p>(가)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A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어, 동시 진입한 (가)의 경우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명백히 대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에게 교차로 통행에 대해서 양보 운전을 해야 함</p> <p>• 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일시 정지 위반, 과속을 하였음</p> <p>•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p>		<p>•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중앙선이 없지만 도로 폭이 넓은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양 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폭은 동일함</p> <p>• 본 사고는 청구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양보운전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p> <p>•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대로) • 동영상에 나타난 양 차량의 교차로 동시진입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소로) • 양 차량의 손상부위 사진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인지 여부
- 양 차량의 교차로 동시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없고, 대소로가 구분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볼 수 있고, 청구차량이 대로 직진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이 소로 직진차량임
- 동영상에 의하면 양차량 선진입 상황은 확인하기 어려워 동시진입 중 사고로 판단함
- 청구차량 조수석 앞휀다, 피청구차량 운전석 전면부 파손됨

결정 이유

-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좌측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 대소로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진입한 도로가 대로에 해당되고, 양 차량이 거의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B선진입) (기본과실)					참고기준 206 (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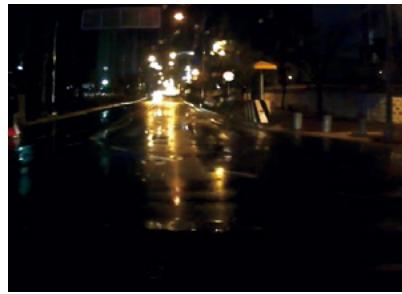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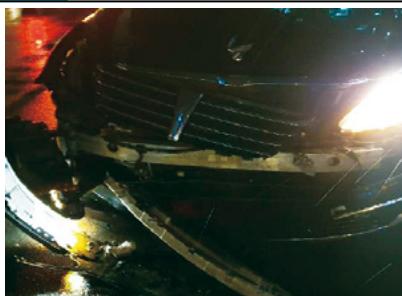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165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6(나)	<p>(나)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라도 명확하게 선진입한 (나)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소로를 진행한 점을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우측 대로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소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에게 양보 운전해야 하고, • 양 차량의 동시 진입사고로 보아야 함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06의 (가) 기본과실을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30% :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p>	<p>약도 미제출</p> <p>• 동영상상 피청구차량은 서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없이 후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함 • 청구차량의 과실 80% :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청구차량 앞범퍼 파손
- 피청구차량 조수석 측면 파손

-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하는 모습(피청구차량 동영상)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사고 장소는 신호기 없는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 진입 중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및 양 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
- 청구차량의 앞범퍼 부위, 피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부 파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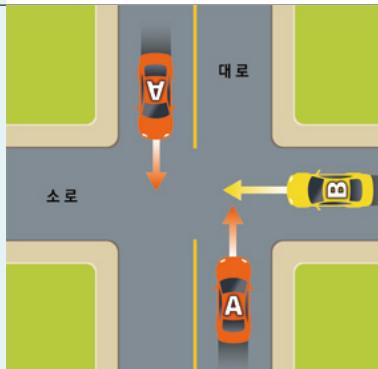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 대로에서 직진으로, 피청구차량 소로에서 직진으로 진행 중 교차로에서 충돌한 사고임
- 통상 대로 진행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대로 진행차량도 교차로에서는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동영상에서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상당히 진행한 시점에 충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부위가 청구차량 전면부 피청구차량 측면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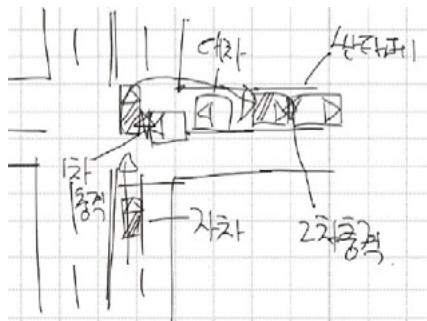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다) 대로 직진 대 소로 직진 사고(A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대로 직진	소로 직진	참고기준 206 (다)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949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다가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1차 사고) 1차 사고 이후 청구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심의외 주차차량을 충격함(2차 사고) 		
참고 인정기준 206(다)	 <p>(다) 소로를 진행하는 B차량이 후진입한 (다)의 경우에 는 동조 제1항에 따라 (가)보다 과실을 가중하여 양 차 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편도 2차로의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편도 1차로의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여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여, 청구차량은 그 충격으로 주차차량을 후미충돌하였음 선진입한 청구차량의 피양불가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 100%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도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고려할 때 청구차량이 진행 한 도로를 대로로 볼 수 없으며, 2차 사고는 청구차량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 따라서, 본 사고는 동일 폭의 도로에서 발생한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이므로, 좌측차량인 청구차량의 과실 60% : 우측차량인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 편도 2차로에서 진행(대로) • 청구차량 조수석 후측면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 편도 1차로에서 진행(소로) • 동영상상 청구차량이 선진입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선진입하여 교차로 통행하였는지 여부
-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

결정 근거

- 사고장소는 동영상상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
- 양 차량의 동영상 및 청구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이 인정됨
- 동영상에 의하면 2차 사고는 1차 사고 이후 청구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교차로에 후진입하던 중 발생한 사고임
- 소로에서 진행한 피청구차량이 후진입하였으므로, 동시진입한 사고의 기본과실 70%에 피청구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하여 80%로 판단함
- 동영상상 2차 사고는 청구차량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므로 과실비율은 1차 사고만 적용하기로 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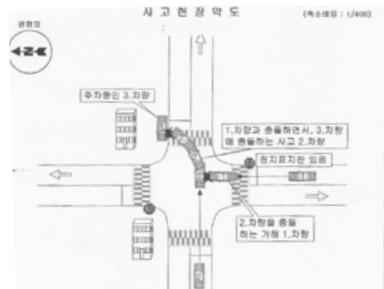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일시정지 위반 사고 (기본과실)					참고기준 20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주행한 도로에는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참고 인정기준 207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 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였고,</p> <p>• 피청구차량은 정지표지판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하고, 청구차량은 그 충격으로 주차차량을 재충격하였음</p> <p>• 피청구차량의 정지표시 위반과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10% : 피청구차량의 과실 90%를 주장함</p>	<p>1. 차량과 충돌하면서, 3.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 2. 차량</p> <p>2. 차량을 충돌하는 가해 1. 차량</p> <p>3. 차량이 3. 차량</p>	<p>1. 차량과 충돌하면서, 3.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 2. 차량</p> <p>2. 차량을 충돌하는 가해 1. 차량</p> <p>3. 차량이 3. 차량</p>

입증 자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표지판이 있음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표시가 없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원인은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임
 - 사고현장 약도상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정지표지판이 있음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교차로 선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피청구자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
 -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자차량이 가해차량으로 판단됨(교차로 통행방법위반)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주행한 도로에는 정지표지가 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내용을 종합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로교통법 제25조 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나, 청구차량 또한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할 때 주의의무가 있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일시정지 위반 사고 (수정과실)				 직진(일시정지 표지위반)	참고기준 20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85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 폭의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청구차량은 천천히 표지를 위반하고,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진행하였음 	
참고 인정기준 207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를 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한 B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측면후미를 충돌한 사고임(청구차량 선진입) 따라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100% 과실에 의한 사고임 		

입증 자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colspan="2" style="text-align: left; padding: 2px;">교통사고사실확인원</th><th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2px;">접수번호 제2019</th></tr> <tr> <td style="padding: 2px;">명</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input type="checkbox"/> 가로자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자</td></tr> <tr> <td style="padding: 2px;">소</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전화번호 :)</td></tr> <tr> <td style="padding: 2px;">연락처</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종별 : 제2종 보통 번호 :</td></tr> <tr> <td style="padding: 2px;">차량</td><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차종 : 승용차 번호 : (소유자 :)</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발생일시 2018.02.02 10:00</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발생장소</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운전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사고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회피내용 한화 사용 0, 부상 4 명 불파 : 현상</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고개요</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1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전면부와 충돌하는 경로오스</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2차량 전면부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전면부와 충돌하는 경로오스</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1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연선 보행자의 경로되어 있으면 그대로 교차 오도 전환하여 #2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뒷 범례 부분으로 충돌하는 경로오스</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1차량 가상운행 모습</td></tr> <tr> <td colspan="3" style="padding: 2px;">#2차량 가상운행 모습</td></tr> </table>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접수번호 제2019	명	<input type="checkbox"/> 가로자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자		소	(전화번호 :)		연락처	종별 : 제2종 보통 번호 :		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소유자 :)		발생일시 2018.02.02 10:0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운전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회피내용 한화 사용 0, 부상 4 명 불파 : 현상			고개요			#1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전면부와 충돌하는 경로오스			#2차량 전면부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전면부와 충돌하는 경로오스			#1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연선 보행자의 경로되어 있으면 그대로 교차 오도 전환하여 #2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뒷 범례 부분으로 충돌하는 경로오스			#1차량 가상운행 모습			#2차량 가상운행 모습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접수번호 제2019																																															
명	<input type="checkbox"/> 가로자 주민등록번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자																																																
소	(전화번호 :)																																																
연락처	종별 : 제2종 보통 번호 :																																																
차량	차종 : 승용차 번호 : (소유자 :)																																																
발생일시 2018.02.02 10:00																																																	
발생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운전 <input type="checkbox"/> 차대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회피내용 한화 사용 0, 부상 4 명 불파 : 현상																																																	
고개요																																																	
#1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전면부와 충돌하는 경로오스																																																	
#2차량 전면부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전면부와 충돌하는 경로오스																																																	
#1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연선 보행자의 경로되어 있으면 그대로 교차 오도 전환하여 #2차량의 우측 뒤 타이어 부분과 #1차량 뒷 범례 부분으로 충돌하는 경로오스																																																	
#1차량 가상운행 모습																																																	
#2차량 가상운행 모습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지시위반 기재됨
- 사고현장 약도 내용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에는 '천천히' 표지판이 설치됨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는 '정지' 표지판이 설치됨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의 지시위반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및 천천히 표지판 준수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표지판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지시위반)
- 청구차량의 측면부 파손만으로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 천천히 표시가 설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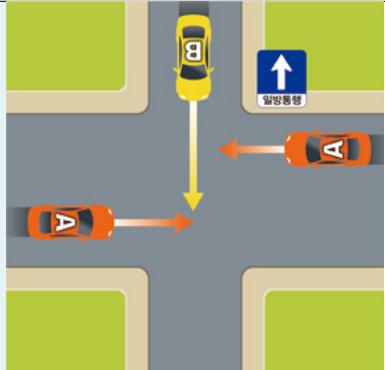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양 차량이 직진 중 충격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 정지표지판이 있으나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고,
-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에는 천천히 표지판이 있는 점,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는 불명확한 점, 제출된 자료 만으로 대소로 구분이 어려운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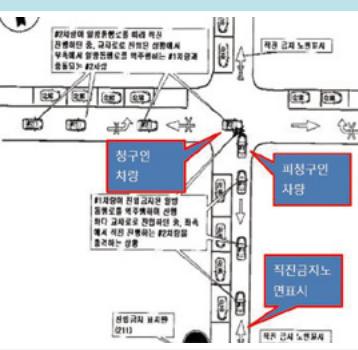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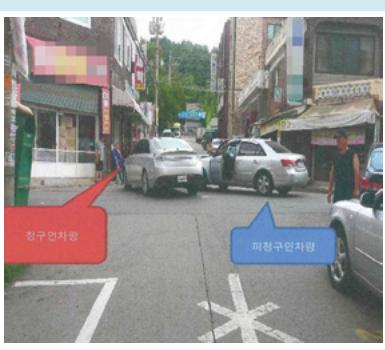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일방통행 위반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직진(일방통행위반)	참고기준 208
------------------------------	---	--	---	--	---------------------

사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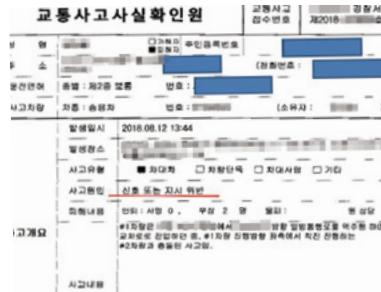
심의번호	2018-05444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사이의 충돌사고로, 피청구차량이 노면 지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08		<p>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주행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정상 직진, 피청구차량은 우측에서 진입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고 역주행하였음 피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사고이고,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의 역주행 진입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의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의 일방통행 역주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청구차량이 과속했음을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30% : 피청구차량의 과실 70%로 결정함이 타당함
--	--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 우측도로에서 노면지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피청구 차량의 모습(동영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은 피청구차량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 양 차량의 파손부위 사진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과속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함(지시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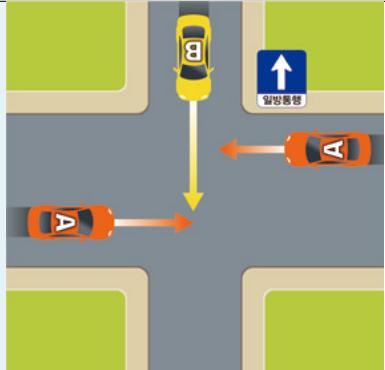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로,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한 사고임
- 청구차량 또한 교차로에서 서행 또는 주의의무가 있고, 피청구차량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차량의 과실 일부 인정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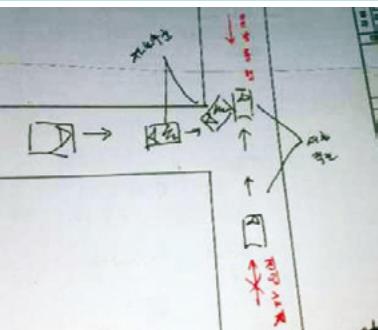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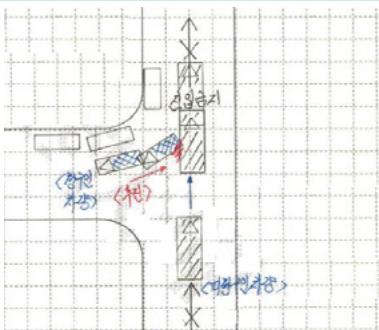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직진 사고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음)

일방통행 위반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	 직진(일방통행위반)	참고기준 208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175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이 일방통행 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후진하던 중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08		<p>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일방통행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지시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주행한 B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A차량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유무와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 청구차량은 일방통행로를 정상 주행하여 우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심의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 피청구차량은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였음
- 청구차량은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100% 사고임

-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 청구차량의 우회전을 확인 후 진행하였는데, 청구차량이 갑자기 후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음
- 후진시 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하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5% : 피청구차량의 과실 15%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이 사고 발생 전 노면의 표시에 따라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 청구차량이 후진하면서 후방에서 역주행하는 피청구차량을 충격하는 모습(동영상)

- 피청구차량이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역주행하는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후진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였고,
- 청구차량은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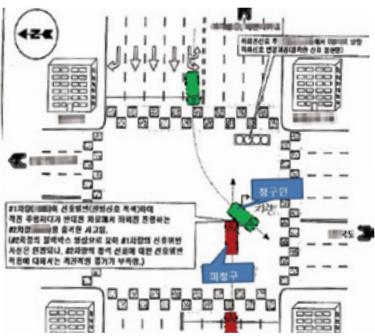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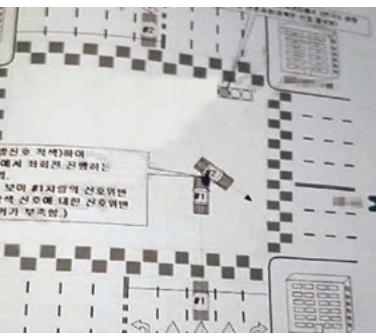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일방통행로인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대형 심의외 차량을 발견하고, 후진 하던 중 후방에서 역주행하던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후진경로를 살피지 않고, 후방에서 피청구차량이 진입 중임에도 그대로 후진한 과실이 인정되는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적색신호 직진) (기본과실)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참고기준 209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46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0 : 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화살표에 따라 좌회전 중 맞은편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참고 인정기준 209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확정되었음 따라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차량 또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신호등 설치됨) • 청구차량 조수석 측면부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함(신호위반) • 피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인정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좌회전 신호에 따른 좌회전으로 추정)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녹색 직진신호 좌회전) (기본과실)				참고기준
	신호등 있음	사거리	녹색 직진신호 직진	녹색 직진신호 좌회전

210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374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0 : 10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0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녹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차량은 녹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 진입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은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인 차량의 명백한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인 차량은 20km이상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로변경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후미를 충격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 차량의 과실 50% :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신호기 있음)

- 피첨구차량의 진행방향(신호기 있음)
 - 피첨구차량이 좌회전 중 충돌 상황(동영상)

주요 쟁점

- 피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이 과속 또는 진로변경을 하였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실을 과실비율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신호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이나 진로변경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태임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함
 - 청구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신호위반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로 판단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녹색 직진신호 좌회전) (수정과실)			 녹색 직진신호 직진	 녹색 직진신호 좌회전	참고기준 21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7457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p>•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사고발생 당시 피청구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한 상태였음</p>		
참고 인정기준 210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A차량은 B차량이 녹색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B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0 : 10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실은 인정함 피청구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고, 만연히 운행하였음 따라서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하여 사고발생에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신호위반 및 교차로 진입시 일시정지 없이 좌회전하였음 사고현장은 가로등으로 인하여 밝은 상태였으므로, 청구 차량은 피청구차량을 발견하기 용이하였음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100%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p>#2차량 피청구 차량이 등화를 켜지 않은 채 주행중인 상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교통사고 사실확인원</th> <th>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XXXXXX</th> <th>경찰서 제2019-XXXXXX</th> </tr> </thead> <tbody> <tr> <td>일 명</td> <td><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주자 주거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등록자</td> <td colspan="2">(관회번호: _____)</td> </tr> <tr> <td>주 소</td> <td colspan="3"><input type="checkbox"/></td> </tr> <tr> <td>운전면허</td> <td><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전면허</td> <td colspan="2">(면허번호: _____)</td> </tr> <tr> <td>사고처장</td> <td>차종: 승용차</td> <td>번호: _____</td> <td>(소유자: _____)</td> </tr> <tr> <td>발생일시</td> <td colspan="3">2019.02.14 23:50</td> </tr> <tr> <td>발생장소</td> <td colspan="3">[Redacted]</td> </tr> <tr> <td>사고유형</td> <td colspan="3"><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td> </tr> <tr> <td>사고원인</td> <td colspan="3">신호 또는 차시 위반</td> </tr> <tr> <td>피해내용</td> <td colspan="3">정도: 사망 0, 부상 3 명, 손해: 4,653,000 원 상당 ※ 1인승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치진 하던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임.</td> </tr> <tr> <td>사고개요</td> <td colspan="3"></td> </tr> </tbody> </table>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XXXXXX	경찰서 제2019-XXXXXX	일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주자 주거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등록자	(관회번호: _____)		주 소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전면허	(면허번호: _____)		사고처장	차종: 승용차	번호: _____	(소유자: _____)	발생일시	2019.02.14 23:50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차시 위반			피해내용	정도: 사망 0, 부상 3 명, 손해: 4,653,000 원 상당 ※ 1인승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치진 하던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제2019-XXXXXX	경찰서 제2019-XXXXXX																																										
일 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주자 주거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등록자	(관회번호: _____)																																											
주 소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전면허	(면허번호: _____)																																											
사고처장	차종: 승용차	번호: _____	(소유자: _____)																																										
발생일시	2019.02.14 23:50																																												
발생장소	[Redacted]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차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대사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 또는 차시 위반																																												
피해내용	정도: 사망 0, 부상 3 명, 손해: 4,653,000 원 상당 ※ 1인승을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치진 하던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임.																																												
사고개요																																													

- 피청구차량이 전조등을 미점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모습(동영상)
-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모습(동영상)

- 피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모습(동영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이 기재됨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이 전조등을 점등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한 사실이 인정됨(신호위반)
- 동영상 등 입증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전조등을 미점등한 사실이 인정되고, 야간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전조등 미점등 사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녹색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함
- 피청구차량 또한 시야가 상당히 제한된 야간에 전조등을 미점등하여 운행한 과실이 인정됨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황색신호 직진) (기본과실)				참고기준 211
신호등 있음	사거리	황색 직진	녹색 직진신호 좌회전, 황색충돌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6-036161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 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1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지만, A차량은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B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 진입한 점, A차량이 직진이라는 점에서 좌회전차량인 B차량보다 과실의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진행 중 교차로 진입쯤 황색신호로 바뀌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는 중이었음 피청구차량은 예측하여 출발하였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진입한 사고임 양 차량의 동일한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양 차량의 과실을 달리 볼 필요가 없어, 청구차량의 과실 50%, 피청구 차량의 과실 50%가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2016-06-01
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 번호:	종별: 차량	면종:	
사고장소 지번:	읍면동: 대명	반도:	(주소): (주)
발행일시	2016.06.08 13:50		
발행장소			
사고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대충돌 <input type="checkbox"/> 차량단독 <input type="checkbox"/> 차사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전차 또는 회차 위반		
피해내용	사망: 0명 부상: 11명 물질: 7,000,000원 등 상당		
사고경과	2016-06-08 13:50 목포로에서 북으로 향하는 차량에 차량으로 충돌로 차량이 충돌한 차량은 차고로		
사고내용			

-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로 변경된 상태에서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 사고발생 직전의 모습(동영상)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 전후 신호 변경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 모두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됨
(양 차량의 신호위반)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후로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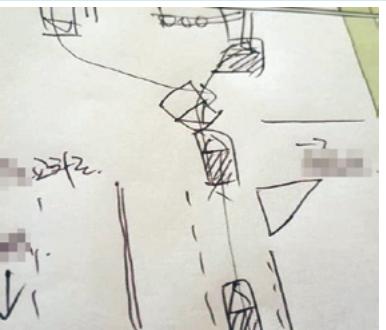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어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나, 청구차량이 직진 차량이고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차량인 점, 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직전 교차로의 신호가 변경된 사정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동일신호) (기본과실)	 신호등 있음	 사거리	 황(적)색 직진	 황(적)색 좌회전	참고기준 212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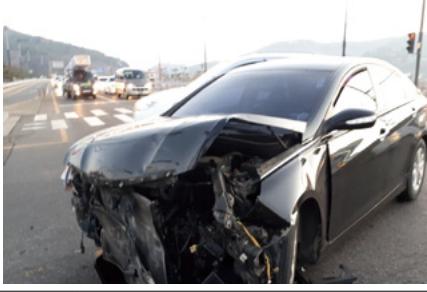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00580	결정비율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참고 인정기준 212		<p>양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황:황/적:적)</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였으나,
-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 따라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 구차량의 과실 100%가 타당함

-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 전하였으나,
-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하였음
- 따라서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청구 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입증 자료

 <p>사고현장 사진 1</p> <p>사고현장 사진 2</p>	 <p>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p>
	 <p>교차로의 신호 체계상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동영상)</p>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비추어 보면, 청구차량 또한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것으로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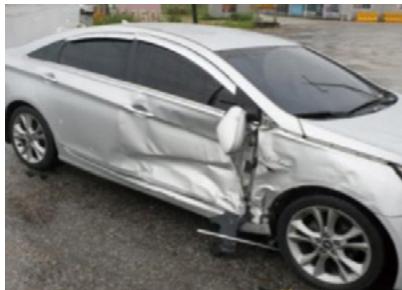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동일신호) (기본과실 준용)				참고기준 212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889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2		<p>양 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에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황:황/적:적)</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였음(양 차량의 신호위반)</p> <p>•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과 피청구차량의 앞부분이 충돌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은 기좌회전 중이었음</p> <p>• 따라서 선진입한 청구차량의 과실 40%, 후진입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진행방향의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음 청구차량의 조수석 측면이 파손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동영상) |
|--|--|

주요 쟁점

- 양 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 양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게 된 경위와 충돌상황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좌회전이 상당히 이루어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사고 장소의 특성상 비보호좌회전차량의 주의의무가 다소 높은 것이 사실이나, 청구차량의 좌회전이 상당히 진행된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맞은편 방향에서 진입)

(나)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사고(A황색에 좌회전 진입하였으나 아직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 (수정과실 준용)				참고기준 213 (나)
신호등 있음	사거리	황색 좌회전 진입, 교차로 벗어나지 못함	녹색 직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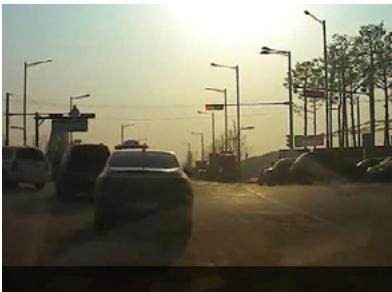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4514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우측 도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3(나)	<p>(나) A차량이 황색신호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교차로에 후진입하는 B차량 역시 전방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80 : 2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였음</p> <p>•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한 이후 교차로 내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차량 정체로 좌회전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피청구차량이 무리하게 직진하였음</p> <p>•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p>	<p>•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정상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였으나,</p> <p>•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 통과하던 중 피청구차량의 후미 추돌하였음</p> <p>• 따라서 교차로에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상황에서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교차로 내에서 적색신호로 변경되는 모습(우측 피청구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신호로 변경되자마자 곧바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동영상) 청구차량과 충돌 직전 상황의 모습(동영상)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였는지 여부
- 녹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유무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시점에 교차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됨
- 피청구차량은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교차로의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신호변경 즉시 출발하여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교차로의 신호가 좌회전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우측도로에서 녹색신호로 바뀌자마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청구차량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에 꼬리물기식으로 진입하였던 점,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녹색신호로 바뀌자마자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 고려하여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맞은편) – 사거리 교차로(신호등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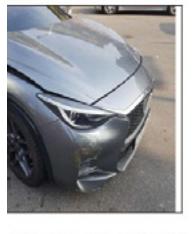
교차로 사고(신호등 없음) (기본과실)					참고기준 214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4337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p>•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14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차량은 직진 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청구인</p>	<p>피청구인</p>

- 청구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2차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청구차량의 과실 90%가 타당함
-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한 이후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 후 좌회전을 시도하였음
- 청구차량은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였음
- 청구차량의 전방주시 소홀과 과속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40%,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사진 • 피청구차량 전면부 파손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시도하는 상황 • 2차선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상황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자차량과 직진차량의 주의의무

결정 근거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자차량이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여 교차로의 상황을 살피면서 교차로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동영상상에 나타난 양 차량의 교차로 진입 경위와 양 차량의 파손부위가 전면부임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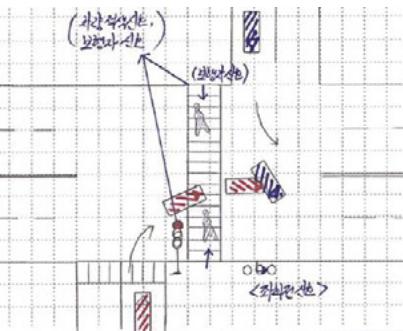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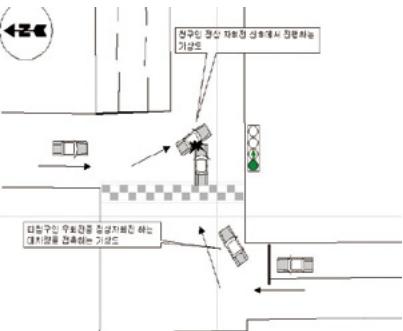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직진차량에게 양보하지 않고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이 중대함
-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을 할 때 정체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이므로, 좌회전을 더욱 주의 깊게 해야 하고, 청구차량은 서행하지 않고 다소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좌회전자차량은 직진차량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직진차량도 교차로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신호위반 사고 (적색신호 직진) (기본과실)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녹색화살표 좌회전	참고기준 215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8048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100 : 0
사고내용	<p>•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우회전 후 적색신호 및 보행자신호에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15	 <p>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는 양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직진차량인 A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A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0 : 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고, 피청구 차량은 우회전 후 적색신호와 보행자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였음 신호에 따라 진행한 청구차량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청구차량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였으므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 아님 청구차량의 정상 좌회전을 인정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청구차량보다 피청구차량이 과실이 많음을 인정하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우회전 후 적색신호에 진행하는 피청구차량의 모습
- 이후 보행자신호(적색신호)에서도 계속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의 모습

-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모습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하여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는 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였는지와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는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우회전 후 적색신호와 보행자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 적색신호 및 보행자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적색신호에 직진한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상대차량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청구차량 0% ● 피청구차량 10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적색) (기본과실)				참고기준 216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적색 좌회전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2018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우측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고,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서로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6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경찰서에는 양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판단된 사고임 청구차량은 운전석 측후면을 충격 당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됨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여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였음 따라서 신호위반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경수번호	동일경찰서 번호
성명	□기재여부 ○선택여부	주민등록번호	60- 204- 212호
주소	(전화번호: 010- ██████████)		
출판여부	출판: 제1권 보통	번역:	
시고자정	차종: 승용차	번호: ██████████	(소유자: ██████████)
발행일시 2018.03.15 22:15			
발행장소 □ 경찰서 □ 교통안전공단 □ 기타			
사고현장 ■ 차량 A □ 차량단속 □ 차량사용 □ 기타			
사고원인			
피해자명			
범의(범인)명: ○ 부상 ○ 사망 ○ 특별: □ 경찰			
고지과 청탁은 ○ 부정 ○ 부당 ○ 특별: □ 경찰			
경찰서 및 관할 경찰서에 대한 민원은 각 경찰서에 접수하는 민원으로 처리된다. 경찰관은 국민의 신고와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민원부문으로 충청남도 시·군			
사고계보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양 차량의 신호위반에 대한 기재 없음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
 -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 ●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양 차량 모두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고,
 -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 중이었고, 피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서 직진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차량은 좌측에서 적색에 좌회전을 시작하여 직좌신호로 바뀐 이후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음
 - 청구차량의 뒷휠다부분이 접촉된 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피해자 구분 없이 사고 내용만 기재된 점, 양 차량의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양 차량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게 되고, 본 사고의 경우에도 신호체계의 시간상 차이는 있으나 양 차량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위와 같이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었음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적색) (수정과실)				참고기준 216
신호등 있음	사거리	적색 직진	적색 좌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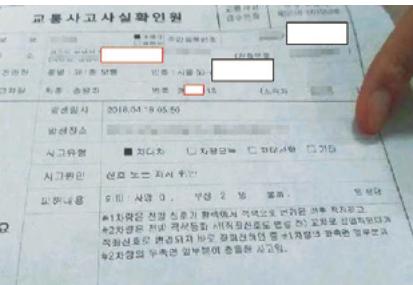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128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좌회전신호로 바뀐 이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신호위반)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6	<p>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의 잘못이 있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어 좌회전하였고, 피청 구차량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였음 그러나, 청구차량이 좌회전신호로 변경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었음을 고려하여 청구차 랑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경찰서의 조사결과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고, 청구차량이 좌회전, 피청 구차량이 직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출발한 것으로 기재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것으로 기재됨

• 청구차량의 전면부 파손 사진
 • 피청구차량의 운전석 앞휀다 파손 사진

주요 쟁점

-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교차로 진입 후 신호체계 변경

결정 근거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상황임
- 이후 청구차량이 진행한 방향의 신호가 적색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뀐 이후 피청구차량과 충돌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좌신호로 변경되기 전 적색신호에 조기 출발하여 좌회전하던 중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로,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임
-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적색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바뀐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양 차량의 동일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양 차량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지만, 본 사고의 경우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사고 발생 당시 직좌신호(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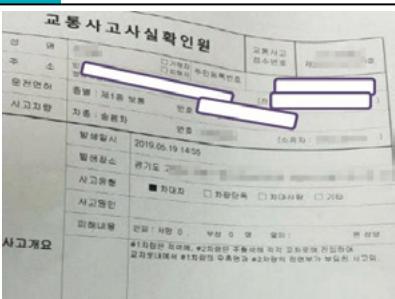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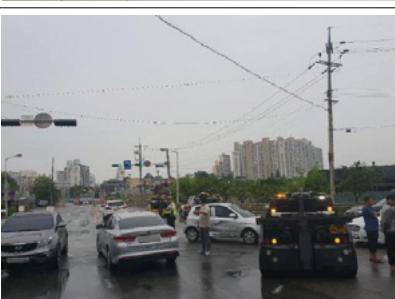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상대 차량이 측면 방향에서 진입)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 (적색 직진 대 황색 좌회전) (수정과실 준용)				참고기준 218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240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여 교차로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18		<p>도표 217에 비해 B차량은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좌회전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B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경찰조사결과 양 차량 신호위반 확정되었음</p> <p>따라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 건이므로, 과실비율은 동등함(50:50)</p>		<p>• 청구차량은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하였음</p> <p>• 피청구차량은 좌회전신호에 좌회전을 하였으나 사고 발생 당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p> <p>•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내용 • 사고현장 및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 청구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을 하였는지와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하였는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신호체계 및 양 차량의 진행 경위

결정 근거

- 동영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피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기재됨
-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황색신호가 상당 시간동안 유지되었고, 청구차량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이전 직진형태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청구차량을 충격함

결정 이유

-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중 우측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임
- 동일한 신호위반의 경우에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한 차량에게 보다 많은 과실이 인정되는 점과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황색신호의 초기에 좌회전 진입하였고, 직진형태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22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69536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0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 차량과 좌회전차량인 B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기록상 청구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결정되었음 피청구차량은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진입하여 피청구 차량의 과실이 중한 사고임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 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30km/h 제한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였음 청구차량이 약 7m의 스카드마크를 발생시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7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 파손부위 사진(전면부)
- 피청구차량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전면부)

-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직진차량 대 오른쪽 좌회전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이고, 양 차량의 동시 진입 사고로 보임
- 동영상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속도위반은 확인하기 어렵고, 양 차량 모두 감속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직진하는 청구차량 주의하지 않은 점, 양 차량 모두 서행하지 아니한 점, 동영상 등 입증자료를 고려하여 결정함
- 도표 220은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며,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의 과실 40%, 좌회전차량의 과실 60%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고도 위 도표 220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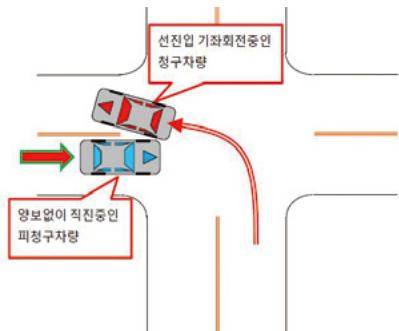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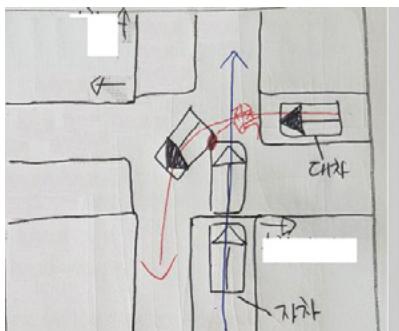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220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62956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50 : 5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0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 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좌회전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직진차량인 A 차량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선진입하여 기좌회전을 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양보 없이 직진을 하다가 청구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음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급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진행 중이었고, 청구차량은 과속으로 진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을 피양할 수 상황이었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1)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최종 정차 상태2)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후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앞부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보임
- 사고발생 당시 사진 및 파손부위 등으로 보아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청구차량의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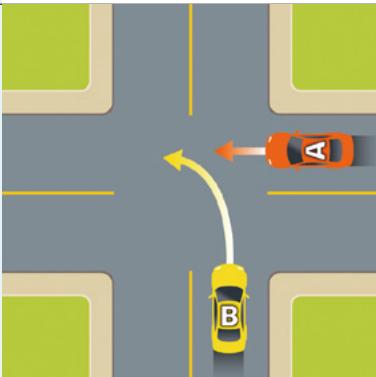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의 사고 후 정차 위치 및 충격부위로 보아,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할 수 있어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0에 따라 왼쪽 직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좌회전차량인 청구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양 차량의 최종 정차위치 및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동등하게 결정함
- 청구차량 50% ● 피청구차량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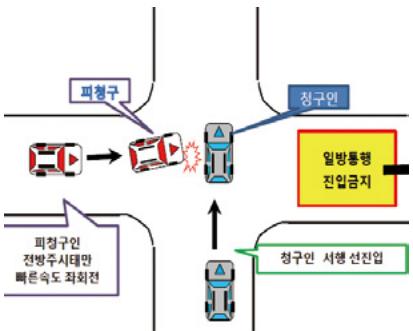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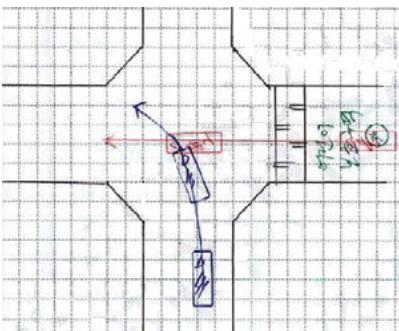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대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22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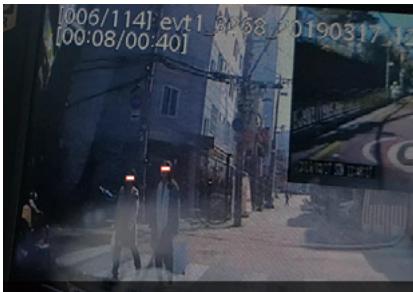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207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측도로에서 직진 중 좌측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1	 <p>직진차량인 A차량이 오른쪽차량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높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청구차량의 선진입을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서행으로 좌회전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차량과 피청구차량은 과실이 동등하다고 보아야 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인 모습 • 피청구차량이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면) •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조수석 앞부분)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과 서행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 및 파손부위 등을 고려하면, 양 차량의 선진입은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양 차량의 서행 또는 과속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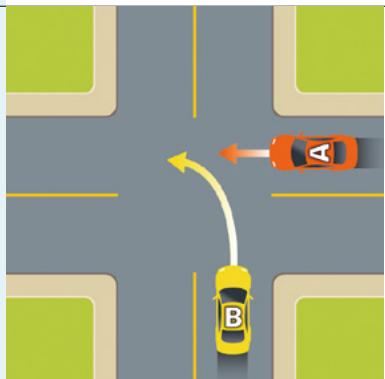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양 차량은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였고, 직진 차량인 청구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 도표 221은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4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판단한 도표 220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과실을 10% 높여 기본과실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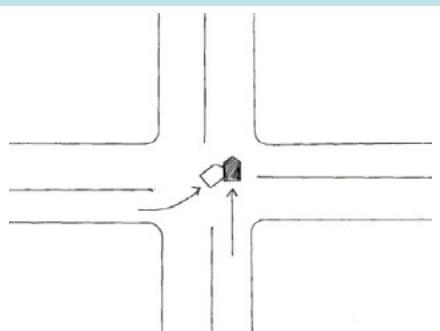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대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221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939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선진입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1	 <p>직진차량인 A차량이 오른쪽차량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오른쪽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따라 좌회전차량인 B차량의 과실을 10% 높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30 : 7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였고, 양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왼쪽 도로에서 급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의 부주의한 운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90% 이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였음 피청구차량의 기좌회전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운전석 측후면) 피청구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조수석 전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한 이후 서행하여 좌회전하는 모습 오른쪽 도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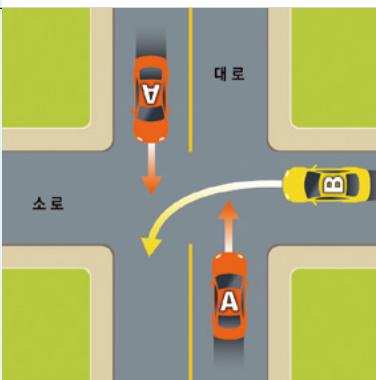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 중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동영상에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였고, 이후 서행으로 청구차량보다 먼저 좌회전을 하였던 상황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1은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30%,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70%로 하고 있는데, 본 사고는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이후 서행상태에서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였던 점을 수정요소로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피청구차량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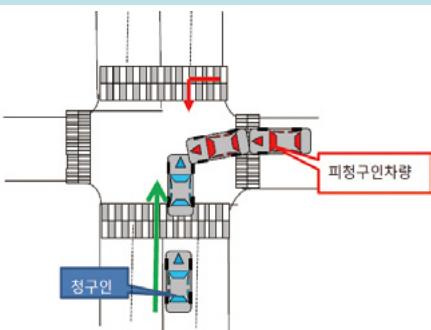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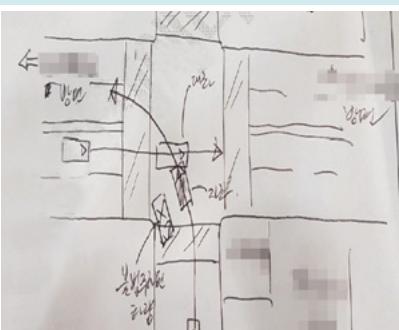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대로 직진	소로 좌회전	참고기준 222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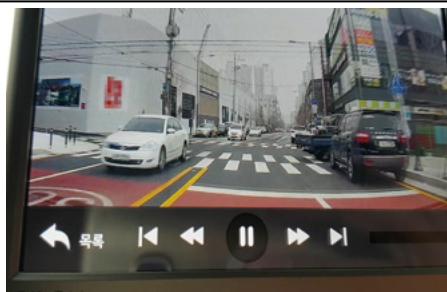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9230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20 : 8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2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였음 도표 222에 해당하는 사고이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정상 좌회전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는 모습
- 피청구차량이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모습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청구차량의 과속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우측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차량의 과속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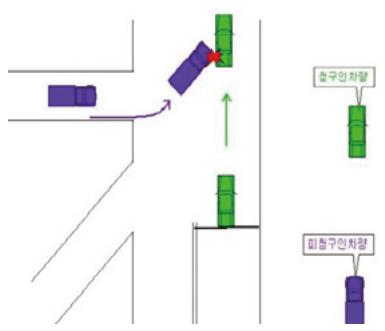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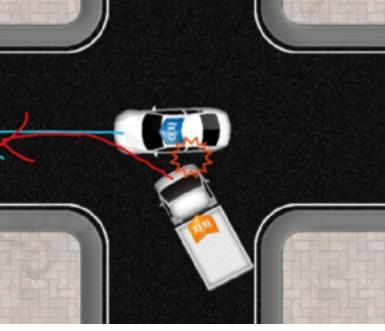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이 충돌한 사고로, 양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대소로 구분이 가능한 도로인 점, 직진차량 대 좌회전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인 점, 양 차량의 과속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2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에게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측을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정하였음
- 청구차량 20% ● 피청구차량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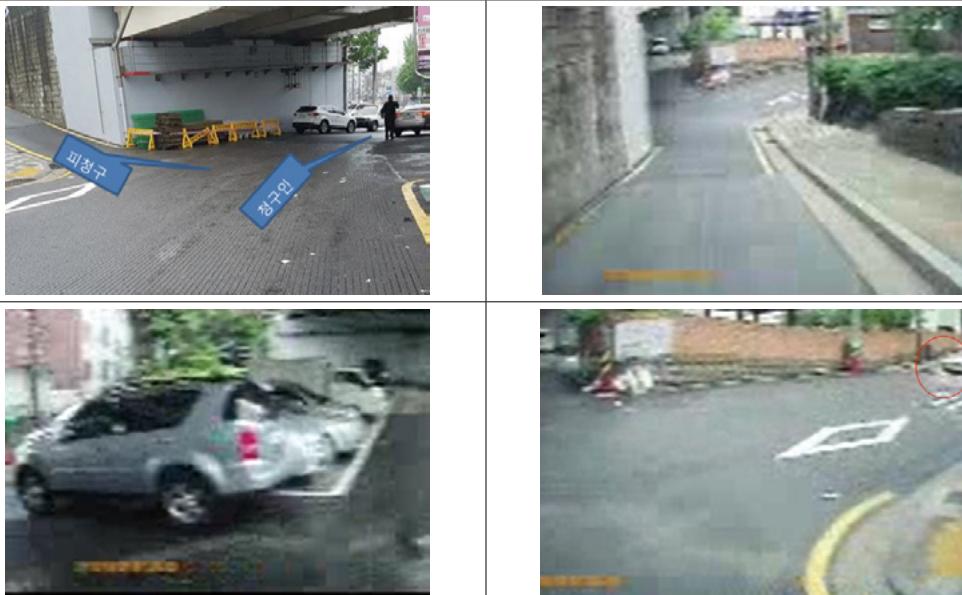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대로 직진 대 소로 좌회전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대로 직진	소로 좌회전	참고기준 222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8-03407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2	 <p>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및 동조 제4항에 따라 대로에서 직진한 A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지만, A차량도 동법 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기본과실률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좌회전하였음</p> <p>• 피청구차량은 청구차량의 좌측후미부위를 접촉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은 피청구차량을 피양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음</p> <p>• 따라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 청구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직진하면서 피청구차량을 치고 지나갔음</p> <p>•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p> <p>•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은 60%가 타당함</p>

입증 자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대로이고, 피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는 소로임)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진입 전 소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 동영상(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는 모습) |
|---|--|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사이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직진 중 원쪽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소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
- 좌회전차량인 피청구차량이 선진입 차량인 점과 청구차량이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소로에서 좌회전을 하였던 피청구차량이 청구차량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도표 222의 기본과실 비율에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결정한 사례임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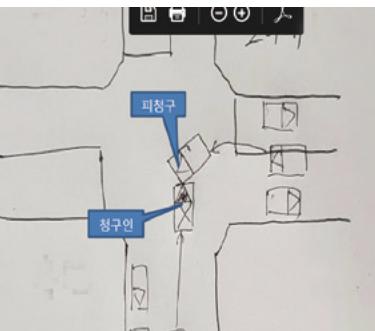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대대로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 소로 직진(왼쪽 도로에서 진입)	← 대로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223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3504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대로에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3	 <p>대로 좌회전차량과 소로 직진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과 제4항이 경합되고 있고, 소로 직진과 좌회전 진입간의 그 주의의무 정도를 달리하기 어려우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50:5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50 : 5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약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왼쪽 소로에서 직진,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 중 접촉한 사고임 도표 223의 기본과실 적용하여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하다고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감속 없이 직진을 하였음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대로에서 기좌회전을 하였음 따라서 청구차량의 과실은 8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차량)
 - 사고현장 사진(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 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음)
 - 동영상(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는 모습)

주요 재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 CCTV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이 인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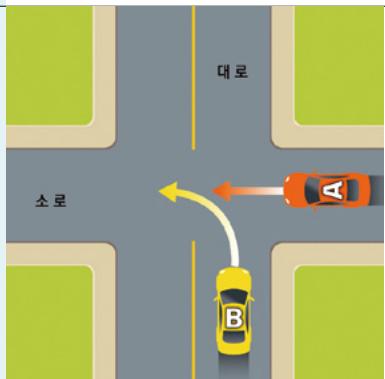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오른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 도표 223에 따라 소로에서 직진을 하던 청구차량의 과실 50%,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의 과실 50%를 기본과실로 하고,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던 점과 청구차량이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청구차량의 과실을 가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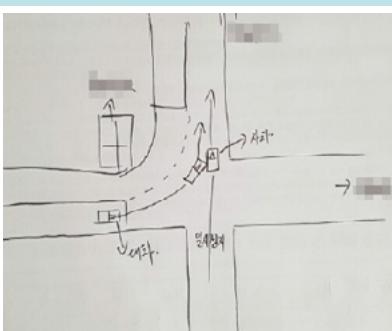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소로 직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대 대로 좌회전(왼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224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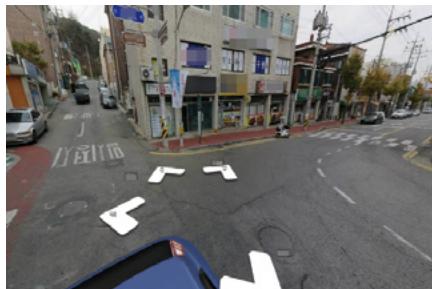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05903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40 : 6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일부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4		도표 223과 달리 소로 직진차량인 A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감안하여 왼쪽 도로에서 진입한 B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5:55로 정하였다.	기본비율 A : B = 45 : 55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하였으나 우측차량이고, 선진입하였음 피청구차량은 교차로에 후진입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였고, 좌측차량임 청구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이 손상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소로에서 직진하였음 피청구차량은 대로에서 좌회전하였음 대로에서 통행하는 피청구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80%, 피청구차량의 과실 2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운전석 측후면)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왼쪽 대로에서 진입하였음)

- 피청구차량의 손상 사진(조수석 앞부분)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였음)

주요 쟁점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왼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의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사고현장 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중 왼쪽 대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판단됨
- 사고현장 사진 및 양 차량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일부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신호기는 없으나 대소로 구분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오른쪽 소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차량과 왼쪽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사고현장 사진 및 양 차량의 손상부위를 고려하면, 청구차량이 일부 선진입하였던 것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4는 도로교통법 제26조 3항에 따라 소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므로,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약간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직진차량의 과실 45 : 좌회전 차량의 과실 55로 정하고 있는데, 본 건에서는 위 도표 224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하여 직진 차량인 청구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차량이 교차로를 일부 선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을 감산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일시정지 위반 좌회전 사고 (수정과실)				참고기준 좌회전(일시정지 위반)	225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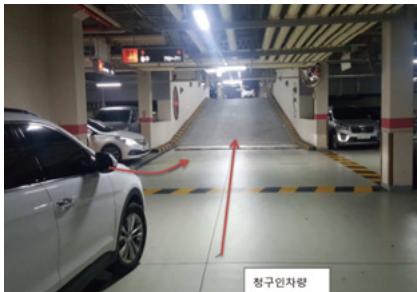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7-061708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왼쪽 '교차로 우선멈춤'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5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일시정지의무가 있고, 동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보다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좌회전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이지만, 직진차량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20:8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20 : 8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이 벽면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곳에서 갑자기 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이 우선멈춤 표지를 위반한 과실을 가진다면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직진하였으나, 피청구차량은 서행 및 선진입 좌회전하였음 피청구차량의 선진입, 청구차량의 서행불이행 등 고려하면, 양 차량의 과실은 동등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영상(청구차량이 주차장에서 직진 중인 모습) 동영상(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지 없음) 피청구차량 진행방향 사진(우선멈춤 표지 있음)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일시정지 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피청구차량의 서행 및 선진입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교차로 우선멈춤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이 서행상태에서 일부 선진입하였음

결정 이유

- 지하주차장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청구차량과 좌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사이에 발생한 사고이고, 피청구차량의 주행 통로에 '교차로 우선멈춤'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점,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하여 좌회전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5는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직진차량으로서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양 차량의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20% : 좌회전차량의 기본과실 8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에서는 위 도표 225의 기본과실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피청구차량이 서행으로 일부 선진입 좌회전하였던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일시정지 위반 직진 (원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준용)	신호등 없음	사거리	정지 STOP 직진(일시정지 위반)	좌회전(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226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2761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양보 표지가 있는 원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본 사고는 삼거리 교차로 사고이나, 도표 226과 동일한 유형의 삼거리 사고를 기준으로 하는 도표 240과 양 차량의 진행방향이 다른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6	<p>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일시정지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A차량이 직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좌회전 중 원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위해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양보 표지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직진을 하다가 정지 표지에 따라 정지 중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중인 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은 양보를 위해 정지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양보 표지 없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양보 표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피청구차량 운전자의 진술로 피청구차량이 정차 중이었다고 기재됨 • 사고현장 사진(양 차량의 진행방향 표시)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일시정지를 위하여 직진하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양보 표지가 있는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청구차량이 양보 또는 일시정지 하였는지는 확인이 불가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의 진입도로에 양보 표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함
- 도표 226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직진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 70%,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기본과실 3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로 도표 226과 차이가 있으나, 양보 표지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점, 양 차량의 진입 방향과 피청구차량의 양보를 위한 정지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도표 226의 기본과실을 준용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됨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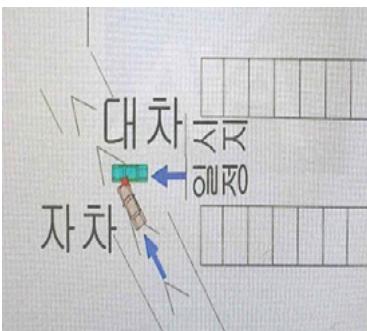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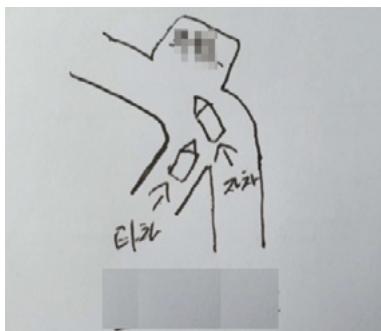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 대 좌회전 사고(측면) – 사거리 교차로(표지가 한쪽방향에만 있음)

일시정지 위반 직진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 사고 (기본과실 준용)	신호등 없음	사거리	직진(일시정지 위반)	좌회전(원쪽 도로에서 진입)	참고기준 227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814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60 : 4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7	 <p>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이 오른쪽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을 감안하여 직진 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 실을 60:4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였으나,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표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청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의 일시정지 표시 위반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차량의 과실 8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삼거리 형태 교차로에서 피청구차량이 정상 직진 중 청구차량이 좌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 좌회전한 청구차량이 부주의하게 운행하여, 피청구차량의 측면을 접촉하였고,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차량의 과실 90%, 피청구차량의 과실 10%가 타당함

입증 자료



- 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시 없음)
- 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사진(일시정지 표시 있음)

- 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앞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측면 파손)

주요 쟁점

- 일시정지 표시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를 위반하여 직진 중이던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현장사진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좌회전하던 청구차량과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우측 도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볼 수 있음
- 도로형태와 양 차량의 파손부위 등 고려할 때 청구차량은 좌회전차량으로 볼 수 있는 점

결정 이유

-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좌회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차량이 진입한 도로의 노면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일시정지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7은 도표 226과 달리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직진차량이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직진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40%, 오른쪽 도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60%로 정하고 있음
- 본 사고는 휴게소 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도표 227의 사고 장소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시정지 표시가 한쪽에만 있는 점, 양 차량의 진입방향을 종합할 때 도표 227의 기본과실을 준용할 수 있는 사고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을 결정하였음
- 청구차량 40% ● 피청구차량 60%

차대차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음

(나) 직진차량 방향에 신호등이 있는 사고(B황색) (수정과실)				참고기준 228 (나)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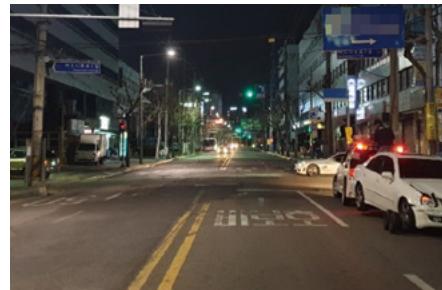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3822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30 : 7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진행방향에만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차량이 왼쪽 소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8(나)	<p>(나) B차량이 황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B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볼 수 있지만, A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한 것과 같으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 다만, 적용함에 있어 A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각 기본과실에 10%를 가산한다.</p> <p>기본비율 A : B = 40 : 6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 중 왼쪽 이면도로에서 먼저 좌회전하여 나오는 피청구차량과 접촉함 도표 228의 (나) 적용하여 청구차량의 과실 60%, 피청구차량의 과실 4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은 과속 및 신호위반 상태에서 직진하였고, 피청구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정상 직진하였음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수신번호
성명	김민수 주민등록번호 03-123456789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운전면허 증명서 제본부	(한정면허)	
사고처장	자택 - 주거지	연락처 (우편번호)
운행일자	2019.04.01 22:35	
운행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사고현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사고 <input type="checkbox"/> 차량사고 <input type="checkbox"/> 행인사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고원인	신호를 지나 시生(死)자	
피해내용	한국인 세월 9, 부모 4 명 통화: 928.000 원 달러	
고개요	2019년 4월 1일 오후 10시 35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에서 차량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은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지나면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량은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지나면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량은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지나면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량은 운전자의 운전으로 인해 신호를 지나면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고처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동영상(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적색신호로 변경된 이후 왼쪽 도로에 진입하는 피 청구차량과 충격하는 모습)

- 사고현장 사진(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청구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기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가 없는 도로를 직진(좌, 우회전 포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 과실비율 산정 수정요소 : 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 변경과 피청구차량의 교차로 조기 진입 여부

결정 그거

- 동영상에 의하면,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적색 신호에 왼쪽 소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확인됨
 - 동영상에 의하면, 피청구차량은 교차로를 조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임

결정 이유

-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적색신호로 바뀌면서 왼쪽 소로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 사고 발생 당시 청구차량이 진행한 도로의 신호가 적색이었던 점과 피청구차량이 조기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 결정함
 - 도표 228의 (나)는 황색신호에 직진한 차량의 경우에 신호위반에 해당하므로, 직진차량의 과실이 중하지만, 신호기 없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과 같음을 고려하여,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60% : 신호기 없는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고, 본 사고에서는 교차로에 진입 후 청구차량의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점과 피청구차량이 교차로에 조기 진입한 점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하였음
 - 청구차량 70% ● 피청구차량 30%

차대차 신호등이 한쪽차량 방향에만 있음

(다) 직진차량 방향에 신호등이 있는 사고(B적색) (기본과실)				참고기준 228 (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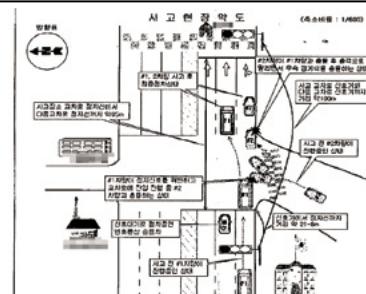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7879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10 : 90
사고내용	<p>• 청구차량의 진행 방향에만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 차량이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p>		
참고 인정기준 228(다)	<p>(다) B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한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과실 정도가 (나)에 비해 중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A차량의 교차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므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하였다. 다만, 적용 함에 있어 A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비추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와 달리 위와 같은 각 기본과실에 10%를 가산한다.</p> <p>기본비율 A : B = 10 : 9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이 대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 중 오른쪽 소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차량이 오른쪽 소로에서 진입하면서 전방주시의 무를 위반한 점 고려하면, 피청구차량의 과실 3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구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청구차량의 원쪽차량은 적색신호에 대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차량은 신호위반하여 직진을 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정상 진행 중이었음 청구차량의 신호위반 사고이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 동영상(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는 모습)
 - 동영상(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인 심의외 차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현장 약도에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으로 표시됨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사고원인에 청구차량의 신호위반으로 기재됨

주요 쟁점

- 신호기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우회전(직진, 좌회전 포함)하는 차량 간의 사고인지 여부

결정 근거

- 동영상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한쪽 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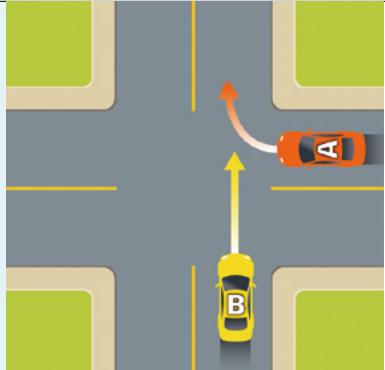
결정 이유

- 한쪽방향에만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 중 신호기가 없는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도표 228의 (다)는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위반한 차량의 과실정도가 황색신호 직진한 차량의 과실에 비하여 중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호기가 없는 도로를 우회전(직진포함)하는 차량이 교차로 진입이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님을 고려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기본과실을 90% : 신호기 없는 도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기본과실을 1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90% ● 피청구차량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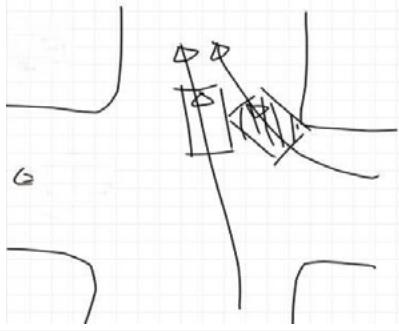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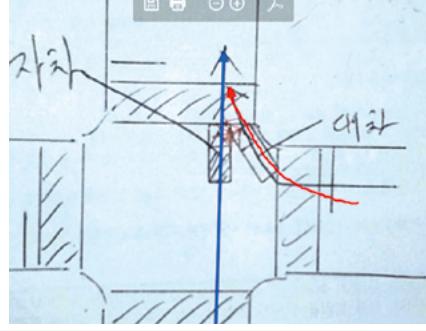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가)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동일 폭 도로) (동시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	직진	참고기준 229 (가)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38915	결정비율	A(청구) : B(피청구) = 60 : 40
사고내용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9(가)	 <p>(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진로상에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므로 이를 감안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한다.</p> <p>기본비율 A : B = 60 : 4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청구차량의 범퍼가 떨어진 것을 보면, 피청구차량이 선진입한 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과실 60%가 타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내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동일함 그러나 청구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선진입한 피청구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

입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구차량의 사진(운전석 앞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의 사진(조수석 앞부분 파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도로와 양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 1) • 사고현장 사진(동일 폭의 도로와 양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 2)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양 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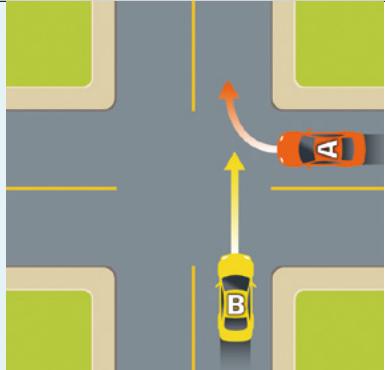
- 동영상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차량과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임
- 동영상과 양 차량의 파손부위, 양 차량의 정지사진을 보면, 양 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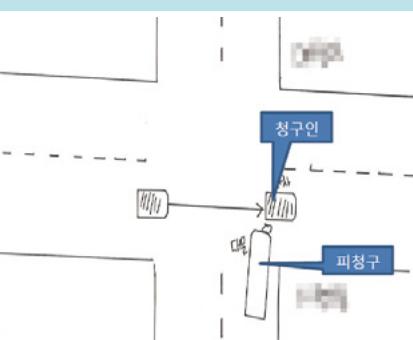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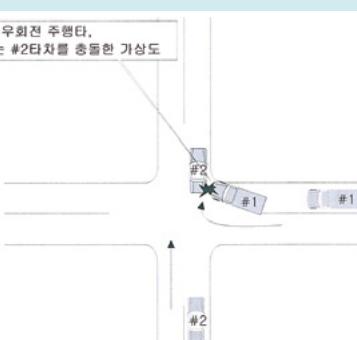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왼쪽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동영상 및 충격부위를 고려하면 양 차량의 동시진입 사고로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가)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오른쪽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오른쪽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도로에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는 것이므로, 우회전차량의 주의의무가 높아지고,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회전차량의 기본과 실을 60% : 직진차량의 기본과실을 40%로 정하였음
- 청구차량 60% ● 피청구차량 40%

차대차 직진과 우회전 사고 – 사거리 교차로(도로폭 기준)

(나) 우회전 대 직진 사고 (동일 폭 도로) (B선진입) (기본과실)	신호등 없음	사거리	우회전	직진	참고기준 229 (나)
---	--------	-----	-----	----	----------------------------

사례 개요	심의번호	2019-048254	결정비율	A(피청구) : B(청구) = 70 : 30
사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호기는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선진입하여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참고 인정기준 229(나)	 <p>(나) 우회전차량이 후진입한 경우(나)에는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하였고, 우회전차량이 선진입한 경우(다)에는 통행우선권을 인정하여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하였다.</p> <p>기본비율 A : B = 70 : 30</p>			

주장 내용	청구인	피청구인
<p>•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청구 차량과 접촉한 사고임</p> <p>• 청구차량은 선진입하였고, 피청구차량은 서행 불이행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의 일방과실이 타당함</p>		 <p>#1차 우회전 주행터, 직진하는 #2차를 충돌한 가상도</p>

입증 자료



- 사고현장 사진(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사고현장 사진(피청구차량의 진행방향)

- 청구차량 사진(조수석 뒷부분 파손)
- 피청구차량 사진(전면부 파손)

주요 쟁점

-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의 선진입 인정 여부

결정 근거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청구차량 간의 사고로 판단됨
- 양 차량의 파손부위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약도 등을 고려하면, 청구차량의 선진입이 인정됨

결정 이유

- 신호기 없는 동일 폭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차량이 직진하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파손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진차량인 청구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을 결정함
- 도표 229의 (나)는 (가)의 과실비율을 기초로 한 상태에서,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과실을 10% 가중하여, 교차로에 선진입한 직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30% : 후진입한 우회전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 70%로 정하고 있음
- 청구차량 30% ● 피청구차량 70%